

## 시간제취업비자( S - 3 ) 발급

- 유학(D-2)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(시간제취업)(S-3)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.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안내 내용에 따라 아르바이트(S-3)비자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, 심각한 경우 출국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방법
  - 제출서류
    -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
    - 성적증명서
    - 시간제취업 추천서
    -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
- 허용범위
  - 허용시간
    - (학부생) 주당 20시간 이내
    - (석·박사과정) 주당 30시간 이내
    - (석·박사 수료 후 논문 준비생) 주당 30시간 이내
    - ※ 학기 중 공휴일 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 무제한(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)
  - 허가 기간 및 사업장 수
    - 처리요령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장소는 2곳으로 한정
  - 허용분야
    - 통역·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 등
    -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, 식당점원,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※ 중국어, 일본어,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
    -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  -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